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의 안 번 호 1785 제출연월일: 2024. 7. 16.

제 출 자:정 부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대통령경호처 소속 경호공무원에 대한 강등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징계로 인하여 강등된 경호공무원의 계급정년을 강등되기전 계급 중 가장 높은 계급의 계급정년으로 하고, 강등된 계급의 계급 정년을 산정할 때 강등되기 전 계급의 근무연수와 강등된 이후의 근무연수를 합산하도록 하는 한편,

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대통령경호처 직원의 안정적인 직무집행을 도모하기 위하여 대통령경호처 직원의 적법한 직무집행으로 인하여 생명·신체 또는 재산상의 손실이 발생한 경우 그 손실을 보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·보완하려는 것임.

법률 제 호

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1조제3항을 제5항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③ 징계로 인하여 강등된 경호공무원의 계급정년은 제1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강등되기 전 계급 중 가장 높은 계급의 계급정년으로 한다. 다만, 1급 직원이 강등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면직하거나 제1항제2호가목의 계급정년을 적용한다.
- ④ 징계로 인하여 강등된 경호공무원의 근무연수를 산정할 때에는 강등되기 전 계급의 근무연수와 강등된 이후의 근무연수를 합산한다. 이 경우 징계로 인하여 강등된 후 다시 강등되기 전 계급이 된 경호공무원의 계급정년을 산정할 때에는 제1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강등되기 전 계급의 근무연수, 강등된 이후의 근무연수와 다시 강등되기 전 계급으로 된 이후의 근무연수를 합산한다.

제20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20조(손실보상) ① 처장은 소속공무원의 적법한 직무집행으로 인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손실을 입은 자에 대하여 제3항에 따른 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당한 보상을 하

여야 한다.

- 1. 손실발생의 원인에 대하여 책임이 없는 자가 입은 생명·신체 또는 재산상의 손실(손실발생의 원인에 대하여 책임이 없는 자가 소속공무원의 직무집행에 자발적으로 협조하거나 물건을 제공하여 생명·신체 또는 재산상의 손실을 입은 경우를 포함한다)
- 2. 손실발생의 원인에 대하여 책임이 있는 자가 자신의 책임에 상응하는 정도를 초과하여 입은 생명·신체 또는 재산상의 손실
- ② 제1항에 따른 손실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는 손실이 있음을 안 날부터 3년, 손실이 발생한 날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 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.
- ③ 제1항에 따른 손실보상청구 사건을 심의·의결하기 위하여 처장 소속으로 손실보상심의위원회를 둔다.
- ④ 제3항에 따른 손실보상심의위원회는 이 법 시행일부터 5년간 존속한다.
- ⑤ 처장은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상금을 받은 청구인에 대하여는 해당 보상금을 환수해야 한다.
- ⑥ 처장은 제5항에 따라 보상금을 반환하여야 할 청구인이 대통령 령으로 정한 기한까지 그 금액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 강 제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.
-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손실보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부 칙

- 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 다만, 제11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- 제2조(강등된 경호공무원의 계급정년에 관한 적용례) 제11조제3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후 경호공무원이 강등된 경우부터 적용한다.
- 제3조(손실보상 청구에 관한 적용례) 제20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이후 소속공무원의 적법한 직무집행으로 인하여 손실을 입은 경우부터 적용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11조(정년) ①・② (생 략)	제11조(정년) ①・② (현행과 같
	음)
<u><신 설></u>	③ 징계로 인하여 강등된 경호
	공무원의 계급정년은 제1항제2
	호에도 불구하고 강등되기 전
	계급 중 가장 높은 계급의 계급
	정년으로 한다. 다만, 1급 직원
	이 강등처분을 받은 경우에는
	면직하거나 제1항제2호가목의
	계급정년을 적용한다.
<u><신 설></u>	④ 징계로 인하여 강등된 경호
	공무원의 근무연수를 산정할 때
	에는 강등되기 전 계급의 근무
	연수와 강등된 이후의 근무연수
	를 합산한다. 이 경우 징계로 인
	하여 강등된 후 다시 강등되기
	전 계급이 된 경호공무원의 계
	급정년을 산정할 때에는 제1항
	제2호에도 불구하고 강등되기
	전 계급의 근무연수, 강등된 이
	후의 근무연수와 다시 강등되기
	전 계급으로 된 이후의 근무연
	수를 합산한다.
<u>③</u> (생 략)	<u>⑤</u> (현행 제3항과 같음)

<신 설>

- 제20조(손실보상) ① 처장은 소속 공무원의 적법한 직무집행으로 인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손실을 입은 자에 대하여 제3항에 따른 손실보상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당 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.
 - 1. 손실발생의 원인에 대하여 책임이 없는 자가 입은 생명 · 신체 또는 재산상의 손실 (손실발생의 원인에 대하여 책임이 없는 자가 소속공무원의 직무집행에 자발적으로 협조하거나 물건을 제공하여 생명・신체 또는 재산상의 손실을 입은 경우를 포함한다)
 - 2. 손실발생의 원인에 대하여 책임이 있는 자가 자신의 책 임에 상응하는 정도를 초과하 여 입은 생명·신체 또는 재 산상의 손실
 - ② 제1항에 따른 손실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는 손실이 있음을 안 날부터 3년, 손실이 발생한 날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

다.

- ③ 제1항에 따른 손실보상청구 사건을 심의·의결하기 위하여 처장 소속으로 손실보상심의위 원회를 둔다.
- ④ 제3항에 따른 손실보상심의위원회는 이 법 시행일부터 5년간 존속한다.
- ⑤ 처장은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상금을 받은 청구인에 대하여는 해당 보상금을 환수해야 한다.
- ⑥ 처장은 제5항에 따라 보상금을 반환하여야 할 청구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한 기한까지 그금액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 강제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.
-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 정한 사항 외에 손실보상에 관 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 로 정한다.

[별지 제1호서식]

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

I. 재정수반요인

연번	조・항(조제목)	주요내용		
1	1	소속공무원의 적법한 직무집행으로 인하여 손실을 입은 자에		
1 제20조(손실보상)	대하여 정당한 보상을 함			

Ⅱ. 미첨부 근거 규정 및 상세 사유

1. 근거 규정

연번	조·항(조제목)	미첨부 근거 규정	
1	제20조(손실보상)	제3호 기술적으로 추계하기 어려운 경우	

2. 상세 사유

O 현 시점에서는 소속공무원의 적법한 공무집행으로 입을 수 있는 손실 발생 빈도나 구체적 액수를 추정할 만한 자료가 부족하므로 재정부담액을 추정하는 것은 기술적 으로 어려움

Ⅲ. 부대의견

O 해당 없음

Ⅳ. 작성자

O 연락처

대통령경호처 기획관리실(02-800-5513)